금융개혁 막힌 경제가 시원하게 뚫립니다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금투업권 현장점검 성과 발표

(현장점검 대토론회 발표자료)

2016. 2. 4.

금융개혁 현장점검반

금융투자팀

[목 차]

1 현장점검 개요

2 현장점검 성과 (주요 사례)

3 주요 불수용 건의 및 사유

4 향후 계획

Ⅰ. 현장점검 개요

1. 현장점검 추진배경

2. 현장점검 현황

3. 주요 건의사항

4. 수용률 현황

Ⅰ-1. 현장점검 추진배경

- 시장과 금융당국간 활발한 의사소통
-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

현장의 요청사항 적극 청취

- 일선 금융현장 방문
  - 실무자 면담, 중소형사 및 대형사 고루 방문
- 금융이용자 면담 실시

신속한 피드백 제공

-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
-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 신청서 작성 지원

금융현장의 수요 충족 미흡, 개혁내용 이해 및 확산 부족

Ⅰ- 2. 현장점검 현황

방문회사

- 총 81개 금융투자사 방문
  - 증권사
  - 선물사
  - 자산운용사
-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 등 면담

면담인원

- 금융회사 임직원, 증권유관기관 직원, 현장메신저 등 총 307명 면담

건의접수

- 총 881건 접수
  - 관행개선 : 63건
  - 제도개선 : 677건
  - 유권해석 : 62건
  - 비조치의견 : 21건
  - 현장조치 : 58건

Ⅰ- 3. 주요 건의사항

◈ 영업부문간 정보교류 제한 → 이해상충 방지체계 완화 요청

◈ 자산관리 영업 확대 → 신탁·일임 관련 규제 완화 요청

◈ 수익원 다변화(자본의 효율적 활용) → 신용공여 규제 완화

◈ 파생상품시장 위축 → 기본예탁금, 사전교육 등 완화 요청

◈ ELS·RP 등 영업 확대 →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요청

Ⅰ- 4. 수용률 현황

수용 현황

- 1~28주차중 총 6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총 291건을 수용(잠정)
- 수용률은 44.3% 수준(잠정)

관행개선 과제

- 총 62건 접수
  - 수용 : 47건
  - 불수용 : 10건
  - 추가검토 : 5건
- 수용률은 75.8%

제도개선 과제(잠정)

- 총 595건 접수
  - 수용 : 248건
  - 불수용 : 224건
  - 추가검토 : 127건
- 수용률은 41.7%

Ⅱ. 현장점검 성과(주요 사례)

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(제도개선) 사례

2. 유권해석 사례

3. 비조치의견서 사례

4. 현장조치 사례

Ⅱ-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① 정보 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 완화 추진

현황

-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, 인적·물적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

문제점

- 강력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업무효율성 저해, 각 사업부문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, 솔루션 등 개발 저해(자본시장법 시행효과 반감)

⇒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근본적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

개선내용 및 효과 등

- 인수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
- 전담중개업자의 헤지펀드 투자시 정보교류 허용
- 장기적으로는 사전적 규제 → 사후처벌 중심으로 전환 추진

Ⅱ-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금융기능 강화

현황

- 한국형 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
  - 기업 신용공여 허용 및 프라임브로커 제도 마련 등

문제점

- 과도한 신용공여 규제로 기업 신용공여 미흡(15.6말, 2.7조원)
- NCR 규제 부담으로 적극적인 자금공급 기능 제약

⇒ 종합금투사업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

개선내용 및 효과 등

- 신용공여 한도 증액(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%까지 허용)
- 지급보증 한도 폐지 및 별도 NCR 체계 마련(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)
-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(최소호가규모 1억 이상) 매칭서비스를 신규 업무로 추가

Ⅱ-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③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

현황

-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제한(PF대출 만기 3개월 제한 등)

문제점

- NCR 규제를 통해 신용위험 등을 사후적으로 관리 가능함에도 과도한 신용공여 규제 유지(영업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약)

⇒ 증권사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 요구

개선내용 및 효과 등

- PF대출에 대한 만기제한(현행 3개월) 폐지
- 증권 반대매매시 일중 매매 시기 자율화
- 매도증권 담보대출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

Ⅱ-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④ 선물회사에 파생상품 관련 신용공여 허용

현황

- 증권사는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 가능
- 전업 선물회사는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 불가

문제점

- 전업 선물회사의 파생상품 영업 제한(증권사에 비해 역차별)
  - 대용증권(채권)을 납입하고 선물을 거래하는 기관투자자에 불편 초래

⇒ 선물회사에 대해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 허용을 요청

개선내용 및 효과 등

- 전업 선물사의 영업기반 확보(독자 생존 기반 마련)
- 기관투자자의 불편 해소(일일정산 불편 완화)

Ⅱ-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⑤ 유가증권시장에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

현황

-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착오거래로 인한 구제제도를 도입 운영중 (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§81의2①)
- 현물 주식시장에는 동 제도 미도입

문제점

- 가격제한폭 제도 확대(± 15% → ± 30%) 시행으로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착오거래로 인한 대량손실 위험 증가

⇒ 주식시장에 착오거래에 따른 구제제도 도입을 건의

개선내용 및 효과 등

- 착오거래시 구제조치 도입으로 투자 안정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

Ⅱ-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⑥ 콜론 운용 한도 확대

현황

- 투자자보호 및 펀드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동일 종목 운용한도를 설정
  - 콜론 운용한도는 10%로 설정

문제점

- 콜론 투자는 다른 자산에 운용하고 남는 잔액을 투자한 결과
  - 운용 한도(10%) 초과 가능성 상존

⇒ 콜론 운용한도 확대 등 필요성 제기

개선내용 및 효과 등

- 콜론 운용 한도 확대(10% → 30%)
- 운용사의 운용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수익률 제고(현금 보유 대신 콜론 운용)

Ⅱ. 현장점검 성과(주요 사례)

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(제도개선) 사례

2. 유권해석 사례

3. 비조치의견서 사례

4. 현장조치 사례

Ⅱ -2. 유권해석 사례

① 외국투자자에 대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면제

현 황

-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시,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(전 세계에서 유일)

문제점

- 상임대리인의 동의서 서명 거부, 외국자산운용사로부터 직접 징구도 곤란

☞ 해외계열사에 외국투자자의 주문 관련 처리결과 제공은 업무 프로세스상 당연히 필요한 절차임

해석내용 및 효과

-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시 해외계열사에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처리 결과 전달이 가능하다고 해석

⇒ 한국시장 이미지 개선 및 국내 증권사 수익기반 확대

Ⅱ -2. 유권해석 사례

② 투자매매업 영위 일임업자의 대출 가능 여부

현 황

- 투자일임(자문)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, 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, 증권, 재산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(자본시장법 § 98①)

문제점

- 반면,투자일임(자문)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겸영시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(자본시장법시행령 §99①)

⇒ 업계는 일임(자문)업자의 대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

해석내용 및 효과

- 투자일임(자문)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겸영시 투자자에게 대출업무 등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

⇒ 투자일임(자문)업자 영업확대 및 수익성 제고 기대

Ⅱ -2. 유권해석 사례

③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 주기

현 황

- 자산운용사는 운용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해야 함(자본시장법 §89 등)

문제점

- ①1년이 되는 시점 및 이후 1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1회만 공시하는지, ②1년이 되는 시점 및 이후 매월 계속 공시하는지 불명확
  - * 업계는 ②안 대로 공시중(1년 시점 및 이후 매월 공시)

해석내용 및 효과

- 1년 시점 및 이후 1개월 시점에서 1회만 공시

⇒ 공시업무 부담 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

Ⅱ -2. 유권해석 사례

④ 증권사 리스크관리 인력의 계열 외은지점 리스크관리 업무 겸업 가능 여부

현 황

- 외국금융회사는 동일 법인임에도 국내 규제(금융전업주의)에 따라 증권지점, 은행지점으로 분리하여 진입

문제점

- 금융전업주의 및 엄격한 firewall 규제로 인하여 외국금융회사의 종합적 위험관리에 지장
  - ☞ 특정 고객과의 거래위험은 그룹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

해석내용 및 효과

- wall-crossing 절차를 통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석

⇒ 계열사 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

Ⅱ. 현장점검 성과(주요 사례)

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 사례

2. 유권해석 사례

3. 비조치의견서 사례

4. 현장조치 사례

Ⅱ -3. 비조치의견서 사례

① CP, RP 등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배제

현황

-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하는 경우, 투자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토록 요구(자본시장법 §80)

문제점

- RP 및 콜 :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투자규모를 정하기 곤란
- 당일발행자산(산금채, 은행채 등) : 사전배분절차 준수시 청약 불가능

비조치효과

- 콜, RP, 당일발행자산에 대한 사전자산배분절차 적용 배제로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및 투자수익 증대

Ⅱ -3. 비조치의견서 사례

② 해외주식 분할·합병시 선매매 허용

현황

- 해외주식이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주식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 예탁원 반영시까지 통상 4~5일 소요

문제점

- 해외에서는 분할, 병합의 효력발생일부터 해당 주식이 거래 가능한 반면, 국내에서는 변경내역 예탁원 반영까지 공매도 방지를 위해 매도가 제한되어 투자자의 재산손실 가능성 증가

  ☞ 선매도시에는 예탁자계좌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(§310 등) 위배 소지

비조치효과

- 주식수량 변동 예탁결제원 반영전 금융회사 고객원장 선반영 및 매매 허용으로 고객 편익증가 및 증권사 운영리스크 감소(선반영을 통해 과매도 해소)

Ⅱ. 현장점검 성과(주요 사례)

1. 현장건의 → 정책반영(제도개선) 사례

2. 유권해석 사례

3. 비조치의견서 사례

4. 현장조치 사례

Ⅱ -4. 현장조치 사례

- **고령자의 ELS 투자 관련 보호 방안**
  - ☞ 관련 가이드라인 폐지(13.12월) 안내

- **조건부 자본증권 최소청약금액 관련 창구지도**
  - ☞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(최소청약단위)으로 제한하지 않음을 안내

- **혼합자산펀드 관련 창구지도**
  - ☞ 자산배분펀드(스윙펀드)에 대한 가이드라인 폐지('14.12월) 안내

- **펀드심사 가이드라인**
  - ☞ 「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」에 따라 폐지됨 ('14.12.30)을 안내

Ⅲ. 주요 불수용 사례 및 이유

1. 파생상품 투자 제한 완화 건의

2. 레버리지비율 개선 건의

3.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허용 건의

4. 기타

Ⅲ. 주요 불수용 건의 및 사유

1) 파생상품 관련 규제완화 요청

- (주요 건의사항) 고객예탁금 인하, 파생상품 거래전 사전 교육제도 완화
- (불수용 사유) 소액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방지 등을 통한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유도

2)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요청

- (주요 건의사항) 파생상품 자산·부채 차감 인정, RP매도시 담보채권 차감인정, 채권 자기매매분 차감 인정 등
- (불수용 사유) 과도한 차입을 통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총한도 규제의 일종(단, 필요시 미조정 실시)

Ⅲ. 주요 불수용 건의 및 사유 (계속)

3) 랩 가입시 서면자료의 전자적 방식 교부 허용

- (건의사항) 투자일임 계약시 교부하는 서면자료를 전자우편,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
- (불수용 사유) 1:1 맞춤계약의 속성상 전면적인 비대면 방식의 일임계약 체결은 곤란

4) 기 타

- 당사 발행 ETN의 신탁, 랩 편입 허용 ⇒ 이해상충 소지
- 자산운용사의 관계인수인 인수채권 편입 범위 확대(AA→A이상)
  ⇒ A등급 회사채의 불안정성, 장외거래 관행 등 고려시 확대 곤란
- 전단채 증권신고서 면제요건 완화(만기 3개월 → 6개월) ⇒ 투자자보호 강화 필요성

Ⅳ. 평 가

- **신속·적극·성실한 답변 → 적극적 업무처리 정착**
  - ☞ 건의접수후 2주내 진행상황 등 안내

- **비조치의견서·유권해석 활용 확대**
  → 규제불확실성 해소·영업환경 개선
  - ☞ 비조치의견서 : 총 0건(14년 이전) → 117건(15년중)

- **금융사 실무자·금융이용자 면담 →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**
  - ☞ 금융현장의 소소한 애로사항 까지 청취 및 해소

- **금융당국·시장간 활발한 의사소통 → 정책반영 확대**
  - ☞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방안(15.10월)

금융개혁 막힌 경제가 시원하게 뚫립니다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감사합니다!